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기업마당**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세무 · 회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해결해주기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 설치된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 종합상담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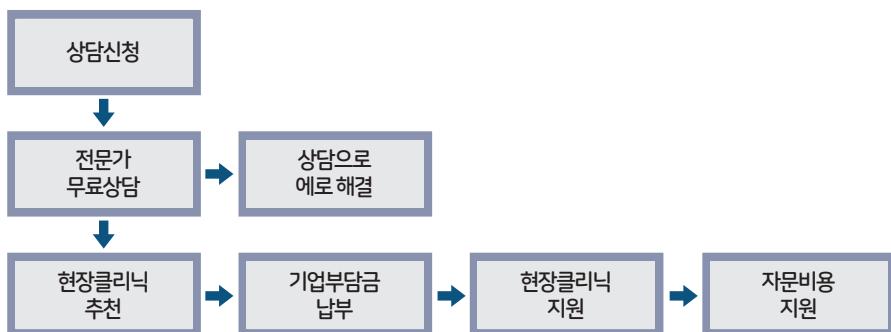
비즈니스지원단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무료로 상시 상담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클리닉이란?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해당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에 애로를 해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절차



## 신청방법(면중 수시)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smes.go.kr/bizlink/)

전화 : 콜센터(☎1357) 또는 각 지역별 비즈니스지원단

구분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민원실	02-2110-6351~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831-1357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210-0031~2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70~3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2층	054-859-8162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지 12	062-360-9137~9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061-727-5416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시험연구센터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064-723-210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805~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6호	031-820-9040~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032-450-1148~1150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81~3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64-38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25~6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대전동 897-2)	033-655-4147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07~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36~9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46~8

# 가이드북 일러두기



## | 세무·회계분야 |

1. 세무·회계분야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기업회계기준과 세금관계법령, 법원판례, 한국회계기준원 및 국세청 예규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며 내용은 회계편람이나 인터넷상(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http://www.kasb.or.kr)))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요법령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 등이며 내용은 법전이나 인터넷상(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판례는 대법원, 행정법원 등의 판결 결과이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이라고 표시되며 인터넷으로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정보([glaw.scourt.go.kr](http://glaw.scour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 행정해석은 주로 한국회계기준원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이나 관련공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http://www.kasb.or.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 상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자료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만을 게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01**

# 세무·회계

- 
- 1. 기업회계기준
  - 2. 법인세
  - 3. 종합소득세
  - 4. 부가가치세
  - 5. 재산세제
  - 6. 기타

# CONTENTS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소개

## 가이드북 일러두기

---

### 1. 기업회계기준

---

Q1. 재무제표란?	12
Q2. 주요 재무비율	13
Q3.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	14
Q4. 감가상각이란?	15
Q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회계처리	16
Q6. 유형자산 재평가	17
Q7.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8
Q8. 개발비의 자산 계상	19
Q9.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20

---

### 2. 법인세

---

Q10. 창사업자 등록 방법	22
Q11. 사업연도의 변경	23
Q12.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24
Q13.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5
Q14. 법인세 분납	26
Q15. 중간 예납의무	27
Q16. 외부조정 신고제도	28
Q17.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	29
Q18. 추계과세	30
Q19.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31
Q20.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4
Q21. 중소기업 출업기준 해당할 경우	35
Q22. 포괄양수도	36

Q23. 채무감면에 대한 비용 인정여부	37
Q24.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38
Q25.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조정	39
Q26. 유형자산 재평가차익의 손익인정 여부	40
Q27. 정부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	41
Q28. 접대비 한도 및 증빙	42
Q29. 기부금의 손금인정 여부	43
Q30.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44
Q31. 종업원 횡령의 대손처리	45
Q32.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46
Q33. 대표이사 퇴직금의 중간정산	47
Q34.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부담비용	48
Q35.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출의 접대비 해당여부	49
Q36. 보험료의 비용처리	50
Q3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51
Q38.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세무조정	52
Q39. 임차인이 건물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	53
Q40. 실질적인 토지의 취득	54
Q41. 물적분할 시 승계	55
Q42.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지원	56
Q43. 투자세액공제	57
Q44. 고용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59
Q45. 법인세 감면규정과 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60
Q4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	61
Q47. 최저한세	62
Q48. 세금감면과 농어촌특별세	63
Q49.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64
Q50. 사업의 휴폐업 방법	65
Q51. 거래처의 휴폐업자 여부 확인 방법	66
Q52. 지방소득세	67

---

### 3. 종합소득세

---

Q5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70
Q5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71
Q55.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72
Q56. 공동사업의 과세방법	73
Q57. 부동산임대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74
Q58. 비과세 근로소득	75
Q5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6
Q6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77
Q61. 사회적기업의 세액감면	78
Q62. 장부 미 기장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79
Q63.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80
Q64. 간편장부의무자와 복식부기의무자	81
Q65. 사업용계좌	82
Q66. 매출누락에 따른 불이익	83
Q67. 지출증빙서류특례 적용대상	84
Q68. 근로장려금	85
Q69.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86
Q70. 성실신고확인제	87

---

### 4. 부가가치세

---

Q71. 조기환급	90
Q72. 사업자단위과세	91
Q73. 사업장현황	92
Q74.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93
Q75.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94
Q76.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	95
Q77. 대손세액공제	96
Q78. 세금계산서 이외의 공제가능 매입세액	97
Q79.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98
Q80. 선 지급 세금계산서	99
Q81.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100
Q8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101
Q83. 전자세금계산서	102

Q84. 판매장려금	103
Q85. 사업양도관련 대리납부제도	104

---

## 5. 재산세제

---

Q86.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106
Q87.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107
Q88. 비상장주식의 평가	108
Q89.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109
Q90. 비상장주식의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	110
Q9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1
Q92.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112
Q93. 상속세의 물납	113
Q94. 증여세와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114
Q9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15
Q96.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116

---

## 6. 기타

---

Q97. 각종 세목·홈택스·납부방법	118
Q98. 전산(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	119
Q99. 세무조사의 절차	120
Q100. 세무조사 대상자	121
Q101. 세무조사 대비 준비서류와 증빙	122
Q102. 세무조사의 연기	123
Q10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24
Q104. 국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25
Q105.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과세방법	126
Q106. 가공경비혐의 기업 파악 방법	127

### 편집위원 소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세무 · 회계

## 1. 기업회계기준

# Q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요 재무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 재무제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A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며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각각 기업의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에 인식되어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금액의 세부내역 뿐만 아니라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대로 재무제표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무제표간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이익잉여금)에 반영되며, 자본변동표에서 자본의 증가내역에 반영됩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간접법으로 작성되는 현금흐름표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의 기초와 기말의 현금의 변동 내역을 알려주고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초와 기말의 변동내역을 알려줍니다.

## 재무제표를 분석하려면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각 계정 간의 비율을 알아야 한다는데 주요 재무비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A

재무제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계정과목과 주요 재무비율은 업종과 규모 등에 따라서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맞는 주요 재무비율을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재무비율을 분석할 때는 아래 항목들을 위주로 분석합니다. 참고로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비율을 통해서도 분석하는 이유는 각종 증가율 확인 및 재무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간의 관계를 확 인할 수 있고, 규모가 다른 회사와의 비교 시에도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재무비율 예시〉

#### 1. 안정성(또는 레버리지) 지표

- ① 부채비율(부채/자본) : 낮을수록 안정적
- ②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높을수록 안정적

#### 2. 성장성 지표

- ① 매출액성장률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 : 높을수록 양호
- ② 영업이익 성장률 : 높을수록 양호
- ③ 당기순이익 성장률 : 높을수록 양호

#### 3. 수익성 지표

- ①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 : 높을수록 양호
- 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 높을수록 양호
- ③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 높을수록 양호
- ④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 높을수록 양호
- ⑤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 : 높을수록 양호

#### 4. 활동성 지표

- ① 총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총자산) : 높을수록 양호
- ②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평균자기자본) : 높을수록 양호

#### 5. 듀퐁 분석 : ROE를 수익성, 활동성, 레버리지로 나누어 분석함

자기자본순이익률(ROE)=당기순이익률×총자산회전율×(1+부채비율)

Q3

기업회계처리기준과 세법의 기준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주로 차이가 발생하나요?

A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나 세법의 인식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은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기준의 차이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의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세법에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준용 및 특례 규정을 두어 많은 부분에서 기업회계 상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경우 등 각종 조세목적상 기업회계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각각 다른 처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의 처리기준이 다른 주요 사례〉

- ① 기간경과 분 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거래로 취급하나 세법에서는 자산의 처분거래로 보아 손익거래로 취급합니다.
- ③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이 사용가치와 회수가능액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상차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④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접대비,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사용액 및 합리적인 추정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Q4

감가상각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손상차손도 기말 시점에서 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등에서 잔존가치(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순처분가치)를 차감한 금액인,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자산의 예상 사용기간 또는 획득 가능 생산량 등)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며, 비용의 인식기준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인식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에 기여하고 자산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금액을 비용화하는데(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동 기여분에 대하여 매번 인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자산별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이용하여 매년 체계적으로 비용화해가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즉,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용화해 가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인 손상회계처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 관련법령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 제4장【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Q5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최초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해왔으나 정액법이 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이라 판단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 A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바꾸고자 하는 감가상각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여, 전 진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 〈참고〉 평가료 납부

- ① 감가상각방법 변경 : 합병, 경제적 여건의 변경,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내용연수의 변경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훼손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평균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감가상각(10.32~10.40)】  
일반기업회계기준 5장【회계추정의변경(5.14~5.17)】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실무지침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변경】

Q6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서 이번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려고 합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으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하며 동일한 과목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재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 항목에 반영하고, 처분하거나 손상될 경우 처리됩니다. 재평가차익으로 인해 증가한 자산가액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자본총액이 증가하므로 부채비율은 낮아지나 재평가 차익이 순이익에는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당기 중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으며, 향후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례〉

취득가액 58,000,000원, 상각누계액 57,999,000원으로 순장부가액 1,000원인 기계장치를 2012년 12월 31일 재평가금액 10,000,000으로 재평가할 경우(회사는 기계장치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었음을 가정할 때)

① 재평가일 현재

(차) 기계장치 9,999,000 (대) 재평가차익(기타포괄손익) 9,999,000

② 재평가일 이후 매년 기말 시점(5년 정액법을 가정함)

(차) 감가상각비 2,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 〈참고〉

재평가차익의 세무처리 문제는 〈II. 법인세〉 편에서 다루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모형(10.24~10.31)

Q7

**취득원가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취득한 설비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설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수취한 정부보조금이므로 자산관련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의 경우, 관련 자산(설비장치)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등 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합니다.

**〈사례〉**

1,000원짜리 설비장치를 70% 정부보조금으로 받아 취득할 경우

① 정부보조금 수취 시

(차) 현금 700 (대) 정부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700

② 설비 구입 시,

(차) 설비장치 1,000 대) 미지급금 1,000

(차) 정부보조금(현금차감 계정) 700 (대) 정부보조금(설비 차감계정) 700

③ 감가상각비 계상 시(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상각을 가정함)

(차) 감가상각비 1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

(차) 정부보조금(설비 차감계정) 70 (대) 감가상각비 70

**관련법령**

일반기업회계기준 17장 【자산관련보조금의표시(17.5)】

Q8

우리 회사는 당기 중 큰 금액을 개발활동에 지출하였습니다.  
동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을까요?

A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활동에 지출한 내용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개발에 성공한 경우의 산출물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동 개발활동에 소요된 자금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일반기업회계기준 11장 【무형자산의인식과최초측정(11.7~11.22)】

Q9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인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에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특례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아래 예외대상 제외)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 ②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금융회사
- ④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등

특례규정에 따르면,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대상이 아닌 지분 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해서 현재 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 가치의 결정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기업 회계기준 31장에 따른 여러 가지 회계처리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31.1~31.17)】

## 2. 법인세

# Q10

## 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내에(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및 기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첨부할 서류〉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③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⑤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⑥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주의사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첨부서류를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사본, 사업등록신청서사본, 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단위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종된 사업장)에 대한 첨부서류와 사업장 소재지 · 업태 · 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추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Q11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며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합니다.

만일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이라면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1〉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2〉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변경】

Q12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 ① 3호)
-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 만)

### 〈참고1〉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2〉

위 첨부서류 중 현금흐름표는 전자신고시 표준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참고3〉

외부조정계산서의 제출 : Q16.(외부조정 신고제도) 참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신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

Q13

##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2018년 이후)		
각 사업연도소득	과표 2억원 이하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3000억	22%	
	과표 3000억 초과	25%	
최저한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7%	
	일반기업	과표 100억 이하	10%
		과표 100억~1,000억	12%
		과표 1,000억 이상	17%

## 1) 중견기업(중소기업유예기간이 경과한 기업)의 최저한 세율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3년간(5~7년차)	8%
졸업유예기간(4년) 이후 2년간(8~9년차)	9%

## 〈참고〉

소득세의 세율(6~38%) 적용과 달리 위의 법인세 세율은 사업연도의 월수가 12개월인 경우의 세율이므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례〉

2012년 5월 20일 신규 개업한 12월 말 결산법인의 과세표준이 150,000,000원일 경우  
환산과세표준 :  $150,000,000 / 8\text{월} \times 12\text{월} = 225,000,000\text{원}$

산출세액 :  $(200,000,000 \times 10\%) + (25,000,000 \times 20\%) / 12\text{월} \times 8\text{월} = 18,833,333\text{원}$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한감면등의배제】

## Q14

## 법인세 분납요건과 분납 시 분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분납규정은 정기분 신고, 예정신고, 예정고지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직접세에 적용되나,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분납요건 및 분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인세 분납요건

: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2,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

〈사례1〉 납부할 세액이 17,000,000 일 때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0,000 / 분납할 세액 7,000,000

〈사례2〉 납부할 세액이 24,000,000 일 때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12,000,000 / 분납할 세액 12,000,000

### 2. 법인세 분납기간

거분	분납기간
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4조【납부】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납부】

# Q15

## 중간예납이란 무엇이고 중간예납의무 대상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예납과 중간예납의무 대상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세 추산액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중간예납은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 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며,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상여·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합니다.

### 2. 중간예납 대상법인이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 Q16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무엇이고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신고분부터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외부조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

수입금액 70억 이상 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자산총액 500억 이상)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법인 중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상인 법인 등 국세청장이 고시한 대상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④【과세표준의신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대상 법인】

Q17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 법인 및 제출의무 면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대상 법인 및 제출의무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출대상 법인

- ① 사업연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 양수, 유·무상 증자, 상속, 증여,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 감자 및 기타 사유로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 ②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2. 제출의무 면제

- ① 상장법인(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지배주주(특수관계자 를 포함)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 ②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
- ③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유한, 합자, 합명)의 소액출자자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제출】

Q18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추계 과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추계라고 하며, 동 추정액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을 추계과세라고 합니다.

추계과세를 할 경우 증빙에 의한 정확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내야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게 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참고〉

추계과세의 경우, 아래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사업 외 이익 및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익금산입 등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합니다.

- ① 사업소득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직원 급여 및 기준경비율을 제외한 금액
- ②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한 금액
- ③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폐업한 때,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및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및경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2항【소득처분】

Q19

법인세 신고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에는 국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각종가산세가 해당되므로 막대한 세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가산세가 증가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수정신고 · 납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매출누락 시 세액의 계산 및 기업회계 상의 회계처리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부가가치세

- ① 부가가치세 : 누락된 공급가액, 가공매입가액 × 10%
- ② 회계처리 :
- (차) 전기손익손실(또는 잡손실) xxx (대) 현금 · 예금xxx

### 2. 법인세

- ①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율(10~22%)
- ② 회계처리:
- (차) 전기손익수정손실(또는 법인세추납액)xxx (대) 현금 · 예금xxx

### 3. 가산세

- (1) 부가가치세 분
  - 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공급가액 × 1% 또는 2%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 × 10% 또는 40%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2년 내 수정신고 시 :50~10% 감면)
  -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 무납부일 수 × 2.5/10,000

---

## (2) 법인세 분

###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 과소신고금액/결정과세표준 × 10% 또는 40%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2년 내 수정신고 시 : 50~10% 감면)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법인세 × 무납부일수 × 2.5/10,000

## 4. 종합소득세 - 인정상여

매출누락의 경우 실제 귀속자가 확인될 때는 실제 귀속자에게,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법인의 누락된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귀속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서 상여처분을,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대표이사로서 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인정상여라 하며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소득세 : 과세표준 × 소득세율(6~38%)

② 가산세 :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 없음

③ 회계처리 :

(차) 현금 · 예금(미회수 시 대여금 등)xxx (대) 소득세 예수금xxx

(차) 소득세예수금xxx (대) 현금 · 예금xxx

### 〈참고〉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상여처분)

발생 사례	<p>① 자진신고 : 법인세 정기분 · 수정신고분 ·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 자증빙불비 · 가공매입 · 매출누락 · 기장이 아닌 추계 결정 등으로 인하여 상여처분한 경우</p> <p>②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와 같 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상여처분한 경우</p>
소득세 신고 방법	<p>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시 할 것</p> <p>②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 지급시기 의제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 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시 할 것</p>
지급 시기 의제	<p>① 자진신고 : 정기분 또는 수정신고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p> <p>② 세무조사 :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p>

#### 주의 사항

- ① 인정상여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신고 및 조사로 인한 추징연도가 아닌 결산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임
- ② 인정상여 근로소득을 위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한 경우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신고 및 납부 불성 실가산세 해당없음(수정신고가 아닌 추가 자진신고에 해당함)
- ③ 근로소득 계산시 인정상여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하게 해당됨
- ④ 법인소득의 추계시 상여처분금액  
= 추계소득금액 - 신고된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

-200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상여처분에 의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분은 반기 납부대상(직전연도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20

당해 연도 결손증소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1.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중소기업일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함)
- ② 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것
- ③ 결손금 소급공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할 것

### 2. 방법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또는 전자신고 하면 됩니다.

### 3. 환급세액

아래 둘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신청 결손금액)×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참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09년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Q21

회사가 규모 확대 등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출업기준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분납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일반기업에 준해서 30일 적용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준해서 2월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중소기업이 아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가 아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규모 확대의 사유로 최초 중소기업 출업기준에 해당될 경우, 당해 과세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분납기한은 2월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③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이 되어 독립성 요건에서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범위】

A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사업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아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양수자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기존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자에게 승계시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1〉 포괄적 양도·양수의 요건

-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2〉

미수금, 미지급금 등과 당해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나,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Q23

법인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면  
해주고 현금으로 회수하기로 합의할 경우 감면해 준  
채무금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집행기준 19의2-19, 2-8【약정에의한채권포기액의대손금처리】  
법인세법집행기준 19의2-19, 2-11【채권·채무재조정에대한처리】

## Q24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란 무엇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등 명목 여부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과세하는데 이러한 이자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 〈참고1〉

아래 경우 등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때
- ②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금 및 학자금 대여금

#### 〈참고2〉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의 취득 임차와 관련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택대여와 동일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3〉 인정이자의 계산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 가지급금등의 적수 / 365일(윤년은 366일)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범위등】

Q25

외화자산 또는 부채에 대하여 연도 말에 평가하는 외화환산손익은 세무 조정을 통해 유보하여야 하나요?

A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고, 비 화폐성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당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산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금융회사 등 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신고 시에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따라서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무신고 또는 취득일 현재의 매매기준을 등으로 신고한 경우,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을 등으로 신고한 경우,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및부채의평가】

## Q26

### 유형자산의 재평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허용된 바, 토지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익이 세법상 손익으로 인정되나요?

## A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평가법을 인정하여 유형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재평가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 차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취급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재평가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고 고정자산의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었거나, 자본에 반영되어 당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처분 시 정확한 처분 손익의 과세를 위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한 후 유보된 사항은 처분이나 폐기 시 추인하여야 합니다.

#### 〈참고1〉

재평가시점의 세무조정은 아래와 같이 이뤄집니다.

- ① 평가이익의 자본(기타포괄손익) 반영 시  
→ 익금산입(기타) & 손금산입(유보)
- ② 평가손실의 영업외비용 반영 시  
→ 손금 불산입(유보)

#### 〈참고2〉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는 〈I. 회계처리〉 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등의익금불산입】

## Q27

### 정부 출연금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A

정부 출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기장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항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와의 상계 또는 처분 시 익금 산입 처리함으로써 과세이연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취득한사업용자산가액의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

Q28

## 법인이 1회 접대비 한도 및 접대비 지출 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1회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의 접대비는 정규 증빙(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전에 먼저 부인됩니다. 이때 사용기준(1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된 금액은 초과 금액만 손금불산입이 아니고 전체금액이 손금 부인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경조사비 21만 원 정규증빙 외 지급 시 21만 원 전체금액 손금부인)

### 〈참고1〉

정규증빙 해당하는 신용카드의 종류 및 부인되는 금액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결재한 거래 상대방이 위장 가맹점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도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2〉 접대비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

상품·제품 등 물품 접대, 접대비로 간주되는 채권의 임의포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국외지역지출(아프리카 지역 등)으로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 대한 지출(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은 정규증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손금불산입】

Q29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 및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액을 알려주세요.

A

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하는 접대비와는 구분이 되며, 법인세법상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 일정액의 한도액 계산이 적용됩니다. (기부 받는 대상에 따라 법정, 지정, 비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며 각각 인정되는 한도액에서 차이 존재).

### 〈참고1〉

#### 기부금 구분 예시

법정기부금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 학교 등의 시설비 등으로 자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자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자출하는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허가받은 학술 · 문화 · 예술,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에 자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비자정기부금	법정 · 지정기부금 외 기부금(ex: 향우회, 동창회) 등

### 〈참고2〉

기부금의 한도액: [한도액 계산대상 소득금액 × 적용률]

구분	적용률	한도액 계산대상 소득금액
법정기부금	50%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
지정기부금	10%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 - 세법상 한도내 법정기부금
비자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후 지급받은 자 성격에 따라 처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Q30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분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이 인정된다는데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며,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상법상 5년 소멸시효를 규정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3년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며,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 1. 신고조정사항

- ①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
- ②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 2. 결산조정사항

-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수표 ·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파산 · 사망 ·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 ②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

위 사례처럼 손금불산입된 대손금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을 때에는 손금인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처리하면 됩니다.

#### 〈참고〉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Q31

종업원이 2016년 중에 횡령하였습니다. 횡령한 것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대손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A

법인의 직원이 횡령한 공금은 대여금인 채권이므로 법인세법상이 대여금 이 대손금으로서 손금 인정되는 데에는 법인세법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즉,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만약 대손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인정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사용인이횡령한금액의대손처리】

Q32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또는 근로의욕의 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비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 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 및 위와 유사한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Q33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원칙적으로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Q34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나요?

A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주택의 임차에 다른 관리비 등 사용자인 직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합니다.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유형등】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관련이없는지출】

# Q35

법인이 타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A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퇴직위로금 등은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집행기준 집행기준19-19-26【파견근로자에게지급하는퇴직위로금의손금산입】

Q36

##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나요?

A

법인이 계약자이고 임직원이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며, 이때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합니다.

## 〈참고〉

예규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또는 종업원	임원	종업원
수익자	법인	임원	종업원
보험료납부액 세무회계처리	- 만기환급금상당 액은 자산처리 -나머지는 보험기 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급여지급기준초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인정
보험료의 근로소득여부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등의손금불산입】

Q37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급규정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시 법인세법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서이46012-11540, 2003.8.25.)을 참조할 때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한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로 처리되게 됩니다.

#### 〈참고〉

- ① 비현실적인 퇴직(임원 연임 등) 사유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② 임원에게 퇴직급여 중 다음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 〈참고〉

- ① 비현실적인 퇴직(임원 연임 등) 사유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② 임원에게 퇴직급여 중 다음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구분	임원퇴직급여한도액
1.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서 위임 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
2. 그 외의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과 손금불산입 상여 등을 제외) $\times 1/10 \times$ 근속연수
1) 소득세법상 임원이 받은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times 1/10 \times 12$ 년 이후 근속연수 $\times 3$ ).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Q38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의 세무조정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연법인세란 무엇이고 등 계정을 계상했을 경우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연법인세란 이월하여 연기한 법인세란 뜻으로,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 상의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세무회계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익금과 손금이 기업회계에서의 수익과 비용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 발생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22장 법인세 회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복잡한 것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규정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비등록 기업 등은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을 손익계산서에 나타내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회계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와 법인세비용을 계상했을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 자산 · 부채를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해당법인이 계상한 법인 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 ·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정 합니다.

**관련법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Q39

건물을 임차하여 당사의 용도에 맞게 대수선공사를 수행한 후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고려해야 할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A

귀사가 지출한 대수선공사비의 성격이 원상회복 조건부 업무용 시설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저가 임차조건부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①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대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임차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고 이후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수선비(자본적 지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동 수선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수선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수선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하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상당액을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 귀속 시기】

Q40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과세 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 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의 다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법인세법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등기되지아니한자산의취급】

## Q41

저희 회사는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물적 분할할 경우 어떤 법인세 혜택이 있는지요?

## A

물적분할이라 함은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이연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 〈참고〉 과세이연요건

-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④ 분할등기 1개월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승계하는 근로자비율이 80/100이상이고 종료일까지 유지할것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시분할법인에대한과세특례】

Q42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각종 조세 감면 · 공제 등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세액감면 · 공제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 5~30% 감면

####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 법인세 · 소득세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
- 재산세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자본관련 등록면허세 4년간 면제

#### 3.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연구 · 인력개발비의 40%를 세액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 연구 ·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연구 · 인력개발비의 25%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사업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1개사업연도 연평균 발생액

#### 4.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5.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 ·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 공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Q43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할 때, 투자액에 일정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그 취득에 소요된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투자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 제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요약〉

제도	공제 대상 투자액	공제율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3%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 시 허용, 감소인원당 1,000만 원 공제금액 축소)	기본3% +추가(6~7%)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6%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장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 물류 시스템설비 등	7%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 재해예방시설, 비상대비 업무 수행 위한 보강 · 확장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등	10%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에너지 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 · 중간재 · 완제품 제조시설	7% (중소기업)

환경 보전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연료 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방진 시 설, 가축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 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감량 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 설, 해양 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틸황 시설	10% (중소기업)
-------------------------	---	------------

※ 법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위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Q44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헌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알려주세요.

## A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혜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① 중소기업의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보다 증가한 경우
- ② 공제세액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 (\*) 공제율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 100%  
청년 등 외 - 50% (세법에서 정한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75%)

###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 ② 공제세액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공제율  
(\*) 공제율(중소기업) : 기본 3% + 추가공제(4~6%)

###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의 경우 3년간 70%(청년의 경우 90%) 해당액 (150만원 한도) 근로소득을 감면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Q45

## 법인세 감면규정과 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제 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면제
-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참고〉

3, 4의 적용 시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 【감면및세액공제액의계산】

Q46

서울에 본사 및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본사는 서울에 두고 제조공장만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함)

### 2. 법인세 · 소득세 감면

① 100% 감면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인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동안 100% 세액감면

② 50% 감면 : 100% 감면 후 그 다음 3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동안 50% 세액 감면

따라서 본 규정은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므로 동 사례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Q47

## 최저한세란 무엇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는 법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감면을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최소한의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1. 최저한세 대상 법인 : 내국법인 및 종합과세하는 외국법인
2. 최저한세율 : 7~17% Q13.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참조
3. 최저한세 :  $\text{Max}(a, b)$ 
  - ① 조세감면 후 과세표준1) × 법인세율 -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 · 감면
  - ②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1)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이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조세 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 특별감가상각비 · 준비금 · 비과세 · 소득공 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참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예

### 1.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 산입의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 2.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감면. 단, 아래 최저한세 적용배제되는 항목을 제외함

-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감면 : 중소기업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Q48

세금을 감면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데 그 내용과 비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 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본세(ex:법인세)의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 지역균형발전,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 하에 비과세 규정이 존재합니다.

〈참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의 예

구분	비과세 대상 예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지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지역균형발전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세감면
기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Q49

##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해 해산할 경우, 피합병법인이 받은 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어떻게 하나요?

A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합니다.

이 경우처럼 합병 등으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1〉 양도손익 계산방법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손익으로 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아래 적격합병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과세이연).

### 〈참고2〉 적격 합병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말함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각 지분비율대로 배정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 할 것
- 합병등기일 1개월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던 근로자중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피합병법인에대한과세】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Q50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에 있습니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을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휴·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얹을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신고】

Q51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누군가로부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물건을 대줄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세금 관련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A

우선,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거래를 한 후 한참 뒤에 문제가 되므로 거래당시에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폐업자는 아닌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위험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의 〈조회, 계산〉 => 〈사업자과세유형, 휴 폐업〉.
2. 흠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 Q52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A

2014년 이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개정으로 법인세에서 완전 독립하여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와 감면 등의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의 신고와 동일하게 세무서에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조정계산서 등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서를 관할 과세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법인세액에 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을 자동으로 받았지만, 현행 방식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증가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세무 · 회계

### 3. 종합소득세

Q53

창업예비자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개인기업과 주식회사는 설립과정, 세금,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유치 등에서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① 설립과정은 법인설립등기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식회사보다는 개인기업이 용이하나, 예전과 달리 주식회사의 설립에 자본금 요건이 없어지고 등기임원 요건도 완화되어 설립하는데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 ②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2%의 세율인데 반해, 소득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표준이 2,160만원이 넘어가면 주식회사보다는 종합소득세가 많게 되고 이익이 더 발생하면 점점 누진적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회계장부의 투명성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기업이 일정금액 이상을 매출하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매출액이 큰 개인기업도 세무 및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 ③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에 지분을 줌으로서 자금조달방법이 개인기업보다 용이합니다.
- ④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라면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에 더 높은 대외신용도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4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제조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으로 당해 연도 납세의무는 종료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 세율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①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분은 6%
- ②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을 초과 4,600만 원 이하 분은 15%
- ③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 8,800만 원 이하 분은 24%
- ④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분은 35%
- ⑤ 과세표준이 1억5천만 원을 초과 3억 원 이하 분은 38%
- ⑥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 5억 원 이하 분은 40%
- ⑦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분은 40%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인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연간 582만 원  $[1,200\text{만 원} \times 6\% + (4,600\text{만 원} - 1,200\text{만 원}) \times 15\%]$ 을 납부하지만 추가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600만 원이 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납부 한 근로소득세 582만 원에 추가적으로 960만 원( $4,000\text{만 원} \times 24\%$ )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55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고용관계와  
독립성 등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방법이  
다른데 이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하는데, 고용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합니다.

### ① 근로소득세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간이과세조견표에 의해 근로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 정산합니다.

### ② 사업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면서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며, 3.3%(지방소득 세 포함)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용역제공자의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은 없습니다.

### ③ 기타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면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여기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합니다.

Q56

동업하여 사업을 개시하려하는데 사업자등록방법, 소득금액 및 소득세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과 지분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비치·기장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소득분배비율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분배된 공동사업자는 각자의 소득공제 등을 공제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어서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합니다.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 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명세, 지분비율 및 약정 손익분배비율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
- ②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및 자산의 등기·등록·부채 등의 재무 상태로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Q57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및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소득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은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①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 사업소득에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금액 순으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동산 임대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단,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해연도 손실을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다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순으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결손금공제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Q58

근로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근로자의 초과수당 및 연구 활동비와 자녀보육 수당의 범위 및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 중에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 ② 종업원이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회사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합니다.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 시외출장의 경우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여비교통비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③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은 월 20만 원 이하의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는 비과세합니다.
- ④ 공장, 광산 및 어선에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일정급여 이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 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월 10만 원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은 비과세합니다. 자녀보육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Q59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요건과 세제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 인건비,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비, 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등 자체연구개발비와 위탁연구개발비가 지출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1.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및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합니다.

- ① 중소기업: 최대 40%[30%+(매출액대비 신성장 R&D 지출액비중×3)]
- ② 비중소기업: 최대 30%[20%+(매출액대비 신성장 R&D 지출액비중×3)]

### 2.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증가금액기준과 당기발생금액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발생금액기준으로 세액공제합니다.

#### (1) 연구개발비 증가금액기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당기발생 연구개발비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 합니다.

\* 2015 사업연도 이후 :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1개사업연도 연평균 발생액

#### (2) 당기 발생금액 기준

중소기업은 당기발생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나, 일반 비중소기업은 당기 발생금액의 2~15%를 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5인(소기업은 3인,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와 제품개발을 위한 견본품 및 원재료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많은 세금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60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다르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종업원수가 제조업은 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사업은 10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1) 소기업

- ① 도소매업 및 의료업은 10%
- ② 그 외의 감면 업종은 30%(수도권 내 지역의 소기업은 20%)

(2) 중기업

- 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소매업 및 의료업은 5%(수도권 내의 지역은 감면 배제)
- ②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그 외의 감면 업종은 15%(수도권 내의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에 한하여 10%)

여기서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및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을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 적용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 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공단, 반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Q61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 서비스제공과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 ① 사회적 기업의 세제혜택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제혜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그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사업의 소득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2

2019년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여 지출한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세법은 근거과세의 원칙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신규로 개업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조사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자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 부대상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6,000만 원

②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및 정보처리업 등: 3,600만 원

③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00만 원

(2) 장부기장을 않은 경우 소득금액계산 방법

상기요건을 충족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일반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금액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2) 일반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3배수(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수)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높은 소득금액이 계상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63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떠한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가 가산세율이 다르고 수입금액기준가산세와 비교한 것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① 일반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② 부정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이증장부 작성, 거짓증빙에 의한 작성, 장부의 파기, 재산의 은닉 등 고의적으로 장부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등을 말합니다.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지만 과소신고한 경우의 일반과소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이고,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와 부정과소 신고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간 10.95%로 연체이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동자금이 없어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빠른 시일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64

사업자는 장부의 비치·기록의무가 있는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에 따라 다른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법정증빙을 토대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는 매출액, 경비지출 및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 1. 간편장부 대상자

-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①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 ②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및 정보처리업 등 : 1억 5천만 원
  - ③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백만 원

### 2.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

- (1)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없으며,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소득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해주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단, 신규사업자와 사업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배제됩니다.

Q65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용대상, 범위, 개설방법 및 이를 위반했을 때에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①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일정한 거래는 제외

### 2. 사업용계좌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거래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 합니다.
- ②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Q66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적발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바로 매출내역이 파악되기 때문에 전액 신고하지만, 순수한 현금매출의 경우에 과세관청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현금매출 중 1억 원을 누락한 경우에 세무조사 등을 통해 파악되면 다음과 같은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① 1억 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인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과 일수 계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 ② 매출액 1억 원 누락이 파악되면 당기순이익이 1억 원 증가하게 되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종합소득 세율의 한계세율이 35%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는 3,5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350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부당과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 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합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에 매출누락에 따른 누락된 경비가 있으면 공제가능하나 누락된 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매출누락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35%이면 개인기업보다 많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67

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3만 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수취 금액의 2/10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법정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①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 원 이하인 경우
- ②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④ 비영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단,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하여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⑤ 국외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⑥ 항공기의 항해용역과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⑦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 ⑧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상기 질문에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Q68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지급을 하는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요건에 충족하는 근로자 등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거주자가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②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일 때 2,000만원, 홀별이 가족가구일 때 3,000만 원, 맞벌이 가구일 때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③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Q69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종 등의 현금영수증발행의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발행업종과 이에 대한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①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 ② 보건업 : 병·의원, 한의원 및 수의업
- ③ 기타업종 : 교습학원, 장례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예식장업,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장의관련서비스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상기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Q70

2011년부터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업종별로 아래와 같은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 ②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및 정보서비스업 등 : 7.5억 원
- ③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의사, 세무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5억 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세무사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근로소득자에게 해주는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해줍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세무 · 회계

## 4. 부가가치세

Q71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큰 금액을 지출하여 자금에 부담이 되었는데 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일반환급보다 빠른 시기(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출 등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세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에도 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10일에 기계설비를 취득한 경우에 1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기간 종료일인 1월 31일로부터 25일 내인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 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의 경우에 환급세액이 큰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에서는 계약서, 대금결제내용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질거래내용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검토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Q72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의무도 본점에서 사업자단위로 하면 되고, 사업자단위로 통산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본점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와 달리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본점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지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및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자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7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 시설현황 및 주요 경비 등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1년에 한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업종별 수입금액 및 결제 수단 내역, 시설현황, 세금계산서 등 수취내역 및 임차료 · 인건비 · 매입액 등 비용내역 등입니다.

신고하는 내용 중에서 시설현황과 비용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의 적정성 등이 파악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내용을 작성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현황을 조사 · 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 인건비 ·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매출 ·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의료업 · 수의업 · 약사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의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Q7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의 건물을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란 공급한 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과 일반적으로 거래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을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정상적인 상거래인 경우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하더라도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Q75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까?

A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복구, 기업설비 근대화 및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국고보조금이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급받은 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은 기업이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의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6

사업자가 9인승 승합차와 7인승 승용차를 취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데, 이는 소형승용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승용자동차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비영업용과 소형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① 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② 소형승용자동차는 사람을 수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입니다. 단,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국민차는 제외합니다.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수선과 주유 등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나, 7인승 승용차는 취득뿐만 아니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필요경비공제는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7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공급가액은 물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나요?

A

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사망 등으로 인해 대손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주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 채권
- ② 어음 또는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과 수표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④ 채무자의 파산, 사업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8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A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아래와 관련된 신용카드매입전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입전표
- ② 목욕·이발·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③ 자동차운전학원 등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79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일반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매입금액의 일정률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A

고철, 폐지 또는 폐유와 같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활용 폐자원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3/103(단,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 사업자는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0/110의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개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과 같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협약을 받은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②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
-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나, 1년간 공급액이 48백만 원을 초과한 개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Q8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시기전에 발행한 경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한 때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시기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 ① 거래 당사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②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Q81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법정증빙으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를 위반한 경우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세금계산서제도는 근거과세와 성실납세에 토대가 되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발급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①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지연 발급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②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미 발급한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③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④ 재화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한 가산세 : 공급가액의 3%

또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착오나 과실의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에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2. 공급받는자의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가공수취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물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Q8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가 거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 이상의 공급대가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① 계속사업자 : 1년(2019.1.1. ~ 2019.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신규사업자 : 신규로 개시하는 간이과세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였을 때에 4,800만 원이 초과하면 최초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일에 개시하고 12월 공급대가가 500만 원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500만 원 × 12개월)이 되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83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작성방법, 제출방법 및 이로 인한 가산세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의무발급 사업자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전사적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국세청이 구축한 발급시스템(홈택스)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제출에 관련한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미발급 : 2%
- ② 다음 달 10일을 초과 했지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③ 발급 후에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④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송 : 0.3%

Q84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위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자와 지급받는 사업자의 세무회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한 금품의 시가를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됩니다.

즉, 거래처가 10억 원 판매실적을 올려 금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되며, 시가 1,000만 원의 재화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10억 1천만 원이 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및 시장개척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외상매출 뿐 아니라 현금매출의 경우에도 발생하나 매출할인은 외상매출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85

건물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않는 사업양수 도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그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양도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① 대리납부 시기: 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양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리납부 하여야 합니다.
- ② 대리납부 신고방법: 대리납부 시에는 공급자의 인적사항,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③ 사업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 5. 재산세제

Q86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 합니까?

A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수용·경매 또는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 합니다.

- ①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면적·위치·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경매가액, 수용가액 또는 매매가액
- ②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면적·위치·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

일반적으로 일반건물, 나대지 및 단독주택 등은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실거래가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는 매년 5월 31일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의 신축 가격 등을 고려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단독주택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등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Q87

A씨의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과 상가의 시준시가는 각각 3억 원과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A

A씨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 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①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데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 당해물건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단독 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9억 원이 되어 상속공제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A 씨의 단독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므로 각각 5억 원과 4억 원이고, 양도가액도 5억 원과 4억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도 발생 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물 건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이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Q88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거래가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60% + 1주당 순자산가치 × 40% (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과다법인은 순손익가치에 40%, 순자산가치에 60%)

1주당 순손익가치는 평가일 이전 3년간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일 현재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제주식의 가치는 과거의 실적과 현재 보유 자산 뿐만아니라 미래가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상기방법은 과거실적과 현재 보유자산으로만 주식가치가 결정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합병 등이 있었거나 주요업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Q89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및 그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는 당해연도에 부동 산 등을 양도하고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30%
- ② 대주주가 아닌 자의 중소기업의 주식 : 10%
- ③ 그 밖의 주식 : 20%

주식 양도인은 양도가액의 5/1,000의 증권거래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2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 2개월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중요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에 언급하는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등이 많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90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대표이사가 본인명의 주식을 처남에게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10,000주를 양도할 경우 처남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Q86번에서 설명한 비상장주식평가액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시가 - 양수대가)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사례1〉

당해주식의 주당 시가가 30,000원(총 시가는 3억 원)인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110,000,000원이 됩니다.

$(300,000,000원 - 100,000,000원) - (90,000,000원) = 110,000,000원$

반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재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보다는 완화하여 다음 금액의 증여 이익을 추정합니다. 이 경우 현저하게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대가를 말합니다.

(시가 - 양수대가) - 3억 원

상기 사례의 경우 시가의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지만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이가 3억 원이 안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91

젊은 세대의 창업활성화와 부의 조기이전을 위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주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을 3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음식점업은 포함하나 유흥주점은 제외)으로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Q9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가 자신의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알고  
싶습니다.

A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기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5천만 원 공제하고 최고 세율이 50%인 일 반증여에 비해서는 매우 큰 특례입니다.

- ① **사업승계의 범위** :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음식점업은 포함하나 유흥주점은 제외) 또는 세법에서 정한 중견기업으로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② **증여세 추징** :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는 경우와 증여받은 수증자의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자액 상 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하는 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 또는 세법에서 정한 중견기업을 영위한 피상속인부터 해당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상속인 1인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일정기한 내에 임원과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2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가업상속공제도에는 여러가지 사후관리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93

상속인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상속재산은 현금 또는 예금과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현금 환가성이 낮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상속세를 현금납부만 관철하면 납세의무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1) 물납의 요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2)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현금의 환가성이 높은 상속재산부터 상속세에 충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상속인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① 국채 및 공채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③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④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Q94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후 목돈의 증여세를 낼 수 없어 상가의 임대소득 등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A

A씨는 아들에게 3억 원의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약 4천만 원이 됩니다. 증여받은 A 씨의 아들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A 씨가 대신 증여세를 내는 경우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에 A씨의 아들은 증여받은 후 상가의 임대소득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연부 연납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는 경우에 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A씨의 아들은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한 금액에 대해 연이율 2.1% 정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만 연부연납기간인 5년에 걸쳐 연부연납이 가능하여 향후 상가임대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분납제도는 증여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금액은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납부세액이 크지 않아 수증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고 담보제공도 필요 없는 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95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율이 40%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2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과 차량운반구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주주구성의 변동이 있을 때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율이 40%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추가적으로 2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법인이 장부가액으로 10억 원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과점주주는 10억 원의 60%인 6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지분변동으로 주식지분이 증가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96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상속세 신고 시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공연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공익법인에게 납세  
협력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협력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의무에 대한 과세관청의 간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출연 받은 재산이 큰 경우는 협력의무 불성실 시 가산세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1. 보고서 제출의무: 공익법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며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법인 운영내역 등을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공익법인 해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결산서류 공시의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6.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제출의무: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6. 기타

Q97

각종 세금신고란 어떠한 세목이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 서비스·홈택스 조회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국세 등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요.

A

### 1. 각종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 2.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서비스·홈택스 조회서비스

#### (1)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서비스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http://www.nts.go.kr))

: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주민세 계산

②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2) 홈택스 조회서비스

① 세금신고 내역조회(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양도소득세, 세금납부 내역조회)

② 기타 내 역조회(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환급금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소득세중간계납세액조회, 수입금액조회, 국민연금보험료조회,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과세유형전환조회, 현지기업고유번호조회,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종합부동산세납세자확인, 나의세무대리정보관리, 사업용계좌신고현황조회 등)

### 3. 세금납부

세금납부는 은행 방문납부, 홈택스 이용(전자납부 가능시간은 07:00~23:30 이나 22:00~23:30 사이에 납부는 익일 07:00에 납부 결과 조회가능),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의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개인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카드로, 사업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사업자명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Q98

전산(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전산(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 예시입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명(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② 휴업사실증명(휴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③ 폐업사실증명(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이용시간 : 한글 : 24시간, 영문 : 09:00~19:00(평일), 09:00~13:00(토요일)
- ④ 납세증명서(국세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국세완납증명)
- ⑤ 납세사실증명(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⑥ 소득금액증명(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⑧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사업
-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법인 | 법인세 정기신고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⑩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소득자 본인이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 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를 조회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 명세서는 한글만 발급가능
- ⑪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사업자가 단위과세적용된 종된사업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⑫ 모범납세자증명(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Q99

## 세무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조사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단계) 조사 대상자의 선정

서면 분석 및 일상적인 세원 관리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기조사선정' 및 탈루혐의가 있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선정'

### 2단계)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

※ 사전 통지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사전통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3단계) 조사

법인은 외형에 따라 15~70일, 개인은 외형에 따라 7~20일간 조사하며,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 4단계) 결정 전 통지

조사가 종결되면 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에 앞서 조사내용 및 추징예산세액을 기재한 문서를 납세자에게 통보합니다(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5단계) 고지서의 발송

위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납세자 주장이 불채택된 경우, 납세고지서를 등기부편이나 교부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의2【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8)】

Q100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무공무원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에서 추출된 경우

다만,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을 것) 또는 법인의 과세금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근 3년간 조세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업종별 평균수입증가율 등에 미루어볼 때 적정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조사 이외에도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신고 등의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배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시 선정되어 세무조사가 수행되기도 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Q101

##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서류와 증빙은 회사규모, 업종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작성된 모든 것이 조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탈루유형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유형별 증거자료의 예시

#### 1. 자산 누락

- ① 재고자산 누락 : 재고자산 명세, 부서별 재고조사표 · 수불부
- ② 자산 가공취득 : 재고조사표, 구입대금 지출증빙 및 통장내역
- ③ 토지, 건물 과대계상 : 취득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작업일지

#### 2. 부채 및 자본 관련

- ① 가공비용 · 부채 : 금융거래추적조사
- ② 자본금의 가장납입 : 입출금 내역, 입금수표번호
- ③ 현물출자자산의 과대평가 : 감정평가서, 매매사례가액

#### 3. 원가 및 경비

- ① 가공원가 : 수불부, 송장, 창고반출증, 재고조사표, 지출증빙
- ② 건설업의 가공원가 : 공사계약서, 현장공사일지, 진행상황 보고서
- ③ 특수관계자와의 고정 · 투자자산 고가매입  
: 계약서, 견적서, 품의서, 감정평가서

#### 4. 외형누락

- ① 공통적인 경우 : 영업 · 구매부에서 작성한 매출 · 매입과 수입 · 지출과 관련한 서류, 판매일보, 견적서, 계약서, 실적보고서
- ②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 : 판매보고서, 제품수불부, 통장 등
- ③ 부산물 매출누락 : 공정별 부산물표, 잉여원자재 및 부산물 판매품의서 또는 관리대장

Q102

저희 법인은 이번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 정상화에 힘쓰는 중이라서 세무조사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A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연기반으려는 기간, 연기의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연기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천재지변
- ②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③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 ⑤ 위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위 사례가 화재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세무조사를 연기시킬만한 타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연기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Q103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까?**

A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 ①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 10년 (역외거래\*15년)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년(역외거래 10년)
- ③ 일반적인 경우 : 5년(역외거래 7년)
- ④ 상속·증여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5년
- 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 10년
-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 15년

\* 거래 당사자의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와 관련된 거래

위에서 언급한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하는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2011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1년 신고기한이 2012년 5월 31일이므로 2012년 6월 1일부터 7년인 2019년 5월 31일까지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됩니다.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불변 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됩니다.

Q104

국세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불복절차는 사후적인 권리구제절차인데 반해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즉,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05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것
-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것

(2)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법인이어야만 가능하므로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고유목적사업과 별도로 수익사업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106

국세청에서 세금신고 불성실기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출누락과 더불어 가공경비혐의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

국세청은 기업들이 이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보고한 손익계산서에서 주요경비인 원재료비, 제조경비와 판매관리비의 합계금액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금액과 원천징수한 인건비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차이금액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이때 차이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주식회사의 세무신고한 손익계산서의 주요경비인 원재료비, 제조경비와 판매관리비 합계액이 50억 원인데, 당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금액이 30억 원이고 원천징수한 인건비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이 5억 원일 때 차이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차이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금액 중 상당 부분의 증빙이 간이영수증이면 가공경비계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업에서 임의 계상한 가공경비로 판정되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CHAPTER  
**02**

## 편집위원 소개

## ▶ 세무 · 회계



박기인

- 경영지도사, 기술평가사, IFRS관리사, 재경관리사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에이케이글로벌(주) 대표 이사
- 응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 E-mail : kiinpark@nate.com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중소기업성공도우미 ☎ 1357, <http://www.mss.go.kr>)
- 발행일 : 2014년 01월 편집일 : 2020년 07월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집

#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

—  
세무 · 회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